

모태펀드 2021년 6월 수시(영화계정)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21년도 모태펀드 6월 수시(영화계정)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 개 요

1.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 총 76억원 이내
투자 조건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 코넥스시장 제외 · 투자의 방법,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등 세부내용은 3.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 4. 주요출자 조건을 적용
출자 대상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운용사 선정방법		·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 2021년 6월 24일(목), 14:00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
조합 결성 시한		· 결성시한 : 3개월 이내. · 부득이한 경우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 억원)

분 야	출자예산 (변동가능)	결성 목표액	최대 출자비율	선정 운용사수	자조합별 최대출자액	신청가능 조합형태
중저예산영화	76	130	59%	1개	76	벤처투자조합

주) 신청 운용사의 출자요청액은 출자예산과 동일하여야 함

※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중저예산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영화 100%(타 분야 투자금지) 투자하되, 중예산* 한국영화에 약정총액의 45% 이상 투자, 저예산** 한국영화에 약정총액의 15% 이상 투자 * 중예산 한국영화 : 순제작비 10억원 이상 60억원 이하 한국영화. 단, 영화진흥위원회 기획개발지원(시나리오 공모전 선정작 포함, 차기작 기획개발지원은 제외) 작품 투자 시, 투자금액만큼 중예산 한국영화 투자로 인정 ** 저예산 한국영화 : 순제작비 10억원 미만 한국영화.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만큼 저예산 한국영화 투자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개발 투자 시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작(독립예술영화(다큐 포함) 제작지원 및 애니메이션 영화종합지원,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작품 투자 시 ○ 조합결성 2년 내 약정총액의 40%, 4년 내 100% 이상을 한국영화에 투자

주) 영화계정 관련 적용사항

- 기획개발 투자시 준수사항

중저예산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완성 이전 단계 투자에 한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준), 상장기업과 그 계열사에서 선행 투자된 프로젝트 투자 금지 - 편당 2억원 초과 투자 금지 - 투자 후 90일 이내 크랭크인(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고시 기준) 시 주목적 투자 불인정

- 기타 적용사항

항 목	중저예산 한국영화
출자자 모집	- 영화 투자·배급·제작 상영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조합 출자 금지
계정 관리	- 조합의 자산은 조합 계좌 내 회계적으로 분리하여 관리 * 중저예산 한국영화: 중예산 / 저예산 / 일반 한국영화
투자 시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업의 회계와 구분되는 프로젝트 별도계좌 에 투자 의무 적용 - 투심위 개최 전 영화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회사(관계자인 대표, 주주까지 포함) 관련 프로젝트 투자 금지(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및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영화인 신문고 기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5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순제작비 10억원 미만 저예산영화는 표준계약서 적용을 권장하고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시급 준용으로 제작환경 개선의무를 대신함). 단, 근로기준법 개정 및 표준계약서 변경 시 개정된 법률 및 변경된 표준계약서를 따름 - 투자제작계약서상 스태프 인건비 체불방지 조항 의무 삽입

영화투자·배급·상영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관련투자	- 관련 프로젝트 투자 금지 (단, 극장용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투자 및 10억원 미만 저예산영화의 투자·배급 허용)
주요출자자 관련 영화 프로젝트	- 주요출자자가 제작한 영화는 투자 금지 - 주요출자자 관련 영화 프로젝트 투자한도는 조합 투자총액의 40% 이내로 제한
동일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한도	- 동일 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한도 : 출자약정액의 20% -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투자한도 : 출자약정액의 10% * 단, 동일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한도는 조합원 전원 동의로 조정 가능
기타	- 주목적 투자 대상은 제출한 투자이행계획에 따라 투자 - 상기 투자의무비율 및 의무사항 미이행 시 해당 기간의 관리보수 삭감하며, 2회 이상 미이행 시 조합을 해산할 수 있음

4. 주요 출자조건

항 목	내 용
투자 방법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 *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등 세부내용은 3. 출자 분야 및 투자대상 참조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 Co-GP의 경우 합산하여 산정
자조합의 투자의무	○ 조합 약정총액에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 다만,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의무로 부여 가능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투자(납입)기간	○ 4년
존속기간	○ 5년

항 목	내 용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 </div> 																						
기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이상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30%이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을 2%p 연동하여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 관리보수율은 최대 0.5%p 하향 가능,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가능 예시) <table border="1" data-bbox="391 1086 1412 131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th> <th colspan="2">조정 전</th> <th rowspan="2">조정</th> <th colspan="2">조정 후</th> </tr> <tr> <th>관리 보수율</th> <th>성과 보수율</th> <th>관리 보수율</th> <th>성과 보수율</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td> <td>2.5%</td> <td>20%</td> <td>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td> <td>2.3%</td> <td>24%</td> </tr> <tr> <td>500억원</td> <td>2.3%</td> <td>20%</td> <td>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td> <td>2.0%</td> <td>26%</td> </tr> </tbody> </table>	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	조정 전		조정	조정 후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300억원	2.5%	20%	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2.3%	24%	500억원	2.3%	20%	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2.0%	26%
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	조정 전		조정	조정 후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300억원	2.5%	20%	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2.3%	24%																		
500억원	2.3%	20%	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2.0%	26%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 자금을 관리하여야 함 ○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 ○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 감사인을 선정 																						
전자보고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통합정보시스템(VICS) 등 사용 의무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 가능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5. 기타 사항

-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출자 대상 조합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조합결성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함. 또한 외국투자회사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기준통화는 원화로 함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결성 이전에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 단, 조합의 대표 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하 “운용인력”)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하며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
- 모든 출자대상은 소관법령 및 기준규약에서 요구하는 투자의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1. 선정 우대기준

(1)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구분	상세내용
LP모집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된 경우 (출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출자금 납입방식	출자금 납입방식을 '일시납'으로 제안하는 경우 * '일시납'으로 제안 후 선정 시, 조합은 '일시납'으로만 결성 가능
기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5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적용 등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에 기여한 경우
	중저예산 영화 및 기획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그러한 투자실적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2. 심의대상 제외 · 선정배제 · 선정보류 · 선정취소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대상 제외,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1) 심의대상 제외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까지 심의대상 제외 가능

가. 제안서 양식에 위배되는 제안서

나. 소관법령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용기관의 제안서

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지원분야의 오입력 포함)

라. 제안서를 제출한 운용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기타 제안서 접수마감시한을 기준으로 조합운용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요구 조건이 미비되어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선정 배제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규약을 위반하여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①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②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④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⑤ 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창업자 내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주 등)에게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기업이 지는 의무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단,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투자기업 내지 조합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는 취지의 연대책임은 그렇지 아니함
- ⑥ 신주 보통주 투자 시, 기업 경영실적 또는 후속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특별상환 청구권 (put-option)을 사용하는 행위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 *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로 제안서 접수마감일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가결산 포함, **미제출시 선정배제**) 기준으로 판정함. 단, 제안서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선정배제요건이 해소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제출 가능
- ** 재무제표의 인정범위: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확인)하고 날인한 재무제표. 단, 상장사의 경우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검토(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나.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심의위원회(구.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 포함)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다음 <표>의 기간까지임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다.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라.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유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마. 신청사가 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바.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용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사원은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자격으로 출자 신청한 경우 제외

사.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는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 인력이어야 함. 그 외 운용사의 경우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펀드 규모	최소기준 인원
300억원 이하	2명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3명
800억원 초과	4명

※ 참여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별첨1 참고

아.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근거법령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 출자신청서 또는 제안서 작성내용 중 선정배제 항목에 대한 사항이 허위사실 기재로 확인된 경우

(3) 선정 보류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4) 선정 취소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 라. 운용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1차 심의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 사. 설립을 전제로 선정된 유한(책임)회사가 선정된 이후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운용인력 또는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3. 제재 사항

- 결성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이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 업무집행조합원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운용인력은 결성 시한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사업의 운용인력 자격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결성시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 취소조건 중 가. 결성규모 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거부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본 제재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공고 조건에 따라 출자 제한 면제할 수 있음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모태 조합 출자 제한 가능
- 선정 조합 중 출자확약서 등(LOC, LOI) 제출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금액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거나 출자 기관이 달라진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 제한
- 상기 제재사항은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모펀드의 출자사업에 동일하게 적용

III.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분야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접수	'21. 6. 21.(월) 10:00부터 '21. 6. 24.(목) 14:00까지	제안서 접수 (온라인)	-
선정	'21. 7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결성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합 결성 완료	-

IV.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구분	내용
지원방법	<p>온라인 신청 매뉴얼(붙임3.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붙임2. 참조)</p> <p>* 온라인 접수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http://install.kvic.or.kr </div>
출자 설명회	<p>- 일시: 2021. 6. 15.(화) 14:00</p> <p>- 방식: 온라인 설명회 개최</p> <p>- 신청: 참석 희망자는 2021. 6. 15.(화) 13시까지 회사명, 성명, 직위,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아래 메일로 참가 신청 (신청자에게 URL링크 발송 예정)</p> <p>* 신청 메일: fof@kvic.or.kr</p>

* 상기 일정은 특이사항 발생시 사전 안내하고 변경될 수 있음

V.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VI. 문의 방법

- 증저예산 영화 : 02-2156-2018, kimtaehyen@kvic.or.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02-2156-2479, datacenter@kvic.or.kr

2021. 6. 14.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별첨 1>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

[벤처투자조합]

□ 신청 자조합의 각 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4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약정액 (신청 자조합 포함)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sum(\text{각 펀드규모} \div \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5,000\text{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원

〈별첨 2〉

1차 심의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펀드 결성 능력	펀드 결성기간, 결성 후 투자집행 기간 등
투자집행 역량	운용사 투자역량, 투자 집중도 등
사후관리 역량	모태 자조합의 사후관리 수준 등
수익률	청산조합 수익배수, 모태 자조합 평가 수익배수 등
기타	운용사 인력 이탈률, 펀드 운용 중 중도 이직 등
가점 등	공고문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등

2차 심의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펀드 결성 능력	결성 가능성 등
운용전략	투자 전략 및 계획, 경험 수준 등
운용사	투자 실적 및 자원, 집중도 등
운용인력	인력 구성 및 실적, 책임운용 등
기타	조합 및 피투자 기업 관리 등